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0년 09 월 1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
(영문명) Hisstory Investment Management Co., Ltd  
(홈페이지) <http://hisstoryinv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, 1004호  
(전 화) 02 - 6337 - 5595

대 표 이 사 : 박 지 훈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이사  
(성 명) 최광성 (전 화) 02-6337-5595

작 성 자 : (직 책) 대리  
(성 명) 김수연 (전 화) 02-6337-5595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제11-7-1호)

## 자기주식 취득 결정

1. 취득예정주식(주)	보통주	271,494			
	우선주				
2. 취득예정금액(원)	보통주	300,000,870			
	우선주				
3. 취득기간	시작일	2020-09-15			
	종료일	2020-09-15			
4. 취득목적	주주가치 제고				
5. 취득방법	장외매매				
6. 위탁증권회사	-				
7.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	직접소유주식(주)	보통주	0	비율(%)	0
		우선주	0	비율(%)	0
	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(주)	보통주	0	비율(%)	0
		우선주	0	비율(%)	0
8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20-09-14			
-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0			
	불참(명)	0			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-			
9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		

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한다.
- 주2) “취득예정금액”은 취득예정주식 수에 결정일 전일의 종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.
- 주3) “비율”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직접소유 및 간접보유 주식수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【자기주식 취득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】

(단위 : 주)

취득방법		주식의 종류	기초 수량	변동 수량			기말 수량	비고	
				취득(+)	처분(-)	소각(-)			
배당 가능 의 범 위 내 취 득	직접 취득	장내 직접 취득	보통주식						
			기타주식						
		장외 직접 취득	보통주식	0	0	0	0	0	-
			기타주식						
		공개매수	보통주식						
			기타주식						
	소계(a)	보통주식							
		기타주식							
	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	수탁자 보유물량	보통주식						
			기타주식						
		현물보유 물량	보통주식						
			기타주식						
		소계(b)	보통주식						
			기타주식						
기타 취득(c)		보통주식							
		기타주식							
총 계(a+b+c)		보통주식	0	0	0	0	0	-	
		기타주식	0	0	0	0	0	-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취득예정주식”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취득하기로 결의한 주식의 종류별 주식수를 기재한다.  
 가. 보통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  
 나. 기타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상기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. 이 경우 그 세부내용을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기재한다.
- 주3) “취득예정금액”에는 해당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종가(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공개매수가격,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결의금액)에 취득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.
- 주4) “취득목적”에는 주식가격의 안정,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, 교환사채의 발행 등 구체적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 특히,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4조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새로운 취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5) “보유예상기간”에는 최종 취득일부터 6월 이후의 기간으로서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유예상기간을 설정하여 기재한다. 다만, 교환사채를 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사채 발행예정일, 발행예정금액, 교환청구예정기간, 발행예정방법(공모, 사모 등) 등을 ‘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

항'에 기재한다.

- 주6) "취득목적"에는 주식가격의 안정,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, 교환사채의 발행 등 구체적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 특히,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4조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새로운 취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7) "취득방법"에는 증권시장에서의 취득, 공개매수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.
- 주8) "위탁투자중개업자"에는 위탁투자중개업자의 한글명을 기재 후 ( )에 영문명을 추가 기재한다.
- 주9) "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"에는 "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취득"과 "기타취득"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10) "비율"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직접소유 및 간접보유 주식수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11) "취득결정일"은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일,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재한다.
- 주12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"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"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3) "자기주식 취득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"은 취득방법별로 기초수량, 변동수량, 기말수량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 "기초수량"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의 보유수량을 말하며, "기말수량"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보유수량을 말한다.
  - 가. "직접취득"이란 상법 제341조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
  - 나. "신탁계약에 의한 취득"이란 신탁업자와 체결한 신탁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(수탁자 보유물량)와 신탁계약해지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(현물보유물량)를 말하며,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.
  - 다. "기타취득"이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,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상법 제341조의2에 근거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.
- 주1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"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"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